

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의례에 관한 고찰

한 복 진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전통음식문화 전공

A Study of Chunshin(薦新) Ceremony on Chosun Dynasty

Han Bok Jin

Dept. of Traditional Food Culture, Jeonju University, Jeonju 560-759, Korea

Abstract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朝鮮王朝實錄)』 on CD-ROM was studied to understand the ceremony and dietary culture of the Chosun dynasty. The 『Chunshin (薦新)』ceremony, the service of offering the first food product of the year to ancestors, was begun in the Song dynasty in China and initiated in the Koryo dynasty in Korea. 『Chunshin』 ceremony as the national auspicious ceremony was settled through the all the Chosun dynasty. The offerings were graded and the Saongwon (司饗院) was in charge of the transportation of them. A king attended the ceremony in person at Jongmyo (宗廟) once in a while, but the Bongsangsi (奉常寺) officials usually took charge of the ceremony. Even though the harvest of crops had failed due to the drought, the quantity of the offering was not curtailed. Seven kinds of the new products were offered in the Koryo dynasty, twenty-seven kinds of them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and thirty-one kinds of the them during the reign of King Sungjong according to the 『Gukjooreui (國朝五禮儀)』 (1474). The offerings were served on the utensils called Du (豆), Byun (筵), and Jak (爵). Most of the offerings were dedicated by public officials and civilians. The meat products in particular were caught by the king on hunting trips, and offered by the king in person.

Key words : Chunshin (薦新), Chosun dynasty, Koryo dynasty, auspicious ceremony, ancestor, Jongmyo (宗廟).

I. 서 론

한 민족의 식생활문화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 속에서 각 계절마다 각 가지 식품들이 새로이 산출되고 사람들은 이 식품들로 새로운 미각의 식생활을 즐기기 위해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다. 이러한 풍속은 경향(傾向)을 막론하고 궁중이나 사가(私家)나 마찬가지로였다. 특히 조상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던 우리 선조들은 제철에 나는 새로운 식품들을 먼저 천신(薦新)하는 풍속이 있었다. 천신이란 새로 나온 곡식이나 과일 등을 사직(社稷)이나 조상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먼저 올리는 것을 말한다. 옛날 가장(家長)은 새로 나온 식품이 있으면 그 식품을 세 번 보기 이전에 구하여 식품 그대로

혹은 음식으로 만들어 종묘(宗廟)나 가묘(家廟) 또는 사당 등에 모셔진 조상께 천신을 하였으며 천신한 후 한 시경 쫓 지나 바쳐졌던 음식을 도로 내려서 자손들이 나누어 먹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이러한 천신의 길례가 있었는데 이는 조상께 올리는 한 예이지만 제사는 다른 의미가 있고 따라서 제례와는 구별이 된다. 천신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종묘천신, 가정에서 행하는 가묘천신, 그리고 무당들이 행하는 천신굿으로 구분된다.^{1,2)}

종묘 천신의 경우 조선의 역대 왕들은 이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했것이 나오면 왕이 직접 또는 왕세자나 사신을 시켜서 종묘에 우선적으로 올리는 천신례를 철저히 행하여 왔다. 그리고 천신에 올리는 물품은 월령으로 정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궁중의 정치·경제 및 풍속사 내지 문화사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서적으로는 조선초기에 완성된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을 들 수 있다. 『경국대전』은 궁중에 관한 직제나 사무 규정 등이 기록되어 있어 궁중 식생활의 자세한 면모를 살필 수는 없으나 이에 비하여 실록은 왕의 재위 기간 중 일어난 일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역사책으로 임금 중심 그리고 지배 세력 중심으로 각 왕조별로 세분하여 편찬되어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유교적 관료 국가였던 조선시대의 통치·제도·생활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완성된 역사 기록서로서 역사를 맡은 관리 중 좌사관은 임금의 움직임에 대하여 기록하고, 우사관은 임금의 말에 대하여 기록을 하여 임금의 일거수 일투족이 어떤 역사기록서보다 가장 잘 나타나 있다³⁻⁵⁾.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의 천신풀속을 『조선왕조실록』⁶⁾을 중심으로 천신 관련 기사를 취합 정리하고 천신례 시행형태 및 천신품품, 천신시기 등을 조사 연구하여 조선시대 왕들의 천신에 대한 사상과 천신 월령을 통하여 당시의 식품 생산 시기와 식품으로서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 밝혀내고자 하며 아울러 조선시대 궁중에서의 식생활에 관한 실제 모습의 한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천신의 유래와 천신한 기록

1. 천신의 유래

천신이란 자손이 조상의 신위(神位)에게 정성스럽게 바치는 음식을 조상이 운감을 하시고 다시 자손에게 내려주시면 조상이 축복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하고 음복(飮福)을 한다는 것이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음복례(飮福禮)가 있으니 곧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한다. 천신은 식품을 음식으로 만들지 않고 재료를 정하게 하여 제상에 그대로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명절이나 제사상에는 재료를 익혀서 가공하여 음식으로 만들어 올린다⁷⁾.

민가에서는 절사(節祀)에 천신하는 음식은 속절이라 이르며 원단(元旦)부터 동지까지 매달 명절이 있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사당에 올린다. 또 계절마다 새로 나오는 식품은 사당에 천신한 다음에야 가족들이 먹는 법이다. 정초에는 떡국(餅湯), 정월 보름에 약식, 삼짇날에 화전(花煎), 곡우에 응어, 단오에 앵두·대맥반(大麥飯), 유두에 오이·밀전병, 칠월 칠석에 참외·수박, 추석에 송병(松餅)·신도주(新稻酒)·중양에 국화전과 울병(栗餅), 동지에 팔죽을 올린다. 매월 새로 나온 과일·채소·물고기들도 천신하는 것은 날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속담에 했것을 세번 보기 전에 천신하다고 하였다⁸⁾.

천신은 중국의 송나라때 생긴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의례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⁹⁾에는 “고려에서는 종묘(宗廟)에 천신했던 2월 보름에는 얼음을 올리는데, 만약 춘분(春分)이 보름 후에 있다면 별일(別日)로써 올린다. 4월 보름에는 보리와 앵도(櫻桃)를 올리고, 7월 보름에는 서직(黍稷)과 양미(梁米)를 올리고, 8월 보름에는 마자(麻子)를 올리고, 12월 보름에는 어물(魚物)을 올린다. 매달 초하루에는 모두 중기(中氣)를 사용하게 되니, 만약 중기(中氣)가 보름 후에 있다면 다음달의 초하루를 사용하게 되는데, 올리는 의식은 삭망제(朔望祭)의 의식과 같았다.”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천신례는 초기의 『조선왕조실록』에 예

조에서 여러 차례 천신의의를 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중에 천신의가 포함되어있다¹²⁾.

1) 태종 조의 천신법

태종 11년(1411)에 예조에서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천신법(薦新法)을 상서하였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거하면 송나라 초기에 이를 천신하였는데, 초하루와 보름 제사에 겸설(兼設)하였고, 신종(神宗) 7년에 상정한 『교묘예문(郊廟禮文)』에는 이르기를, ‘옛날 종묘(宗廟)에 천신할 때는 날을 점치지도 않고, 신주(神主)도 모셔 내지 않았으며, 전(奠)만 드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근래에 이르러 날을 택하여 천신함은 잘못이다. 천자(天子)와 제후는 물건이 익기만 하면 천신하는 것이지, 맹(孟)·중(仲)·계(季)로써 한정하지 않는 것이다.’하였다. 또 이르기를, ‘모든 신물(新物)로 제때에 나오는 것이면 즉일로 <종묘에> 올려 드린다.’하였으니, 이미 정식의 제사(正祭)가 아니라면 예법에 날짜를 점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조(前朝)와 송나라 초기의 제도를 본받아, 모든 신물은 초하루와 보름 제사를 기다려 겸천하고 있사오니, ‘즉일로 올려 드린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모든 신물로 제때에 나오는 것이라면 초하루·보름을 기다리지 마시고, 또 날짜도 점칠 것 없이 즉일로 천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에 초하루·보름을 만나게 된다면, 마땅히 구제에 따라 겸천하게 하신다면 거의 예에 합할 것입니다.”¹⁰⁾하였다.

이는 천신은 제례 처럼 정해진 날이 아니고 천신물종이 새로 나왔을 때 바로 올리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2. 천신의(薦新儀)

유교사회에서 왕은 천명(天命)을 받아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 종묘는 개국 시조인 태조를 모신 나라의 사당이므로 태묘(太廟)라고도 한다. 이곳은 나라의 천명과 그 명을 받은 초월적인 존재자의 혼령이 머물고 있는 신성지이다¹¹⁾. 조선왕조에서는 천신을 우선 종묘에 올리는데 진설과 행례는 「천신의(薦新儀)」에 따른다. 태종 15년(1415) 3월에 예조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여러 제사의 의식을 올렸는데

1) 세종 조의 천신종묘의(薦新宗廟儀)(1449)¹³⁾

진설(陳設) “1일 전에 전사시(典祀寺)에서 신물(新物)을 재소(齋所) 주방에 진설하고, 판전사(判典祀)가 종묘령(宗廟令)과 더불어 주방에 나아가서 같이 잔다. 그날이 되면 변(邊)·두(豆)를 매 실(室)의 지계문밖(戶外)에 설치하고 신물(新物)을 담는다. 매 실마다 중춘(仲春)에는 얼음을 드리는데 두에다 담고, 계춘(季春)에는 고사리(蕨)인데 두에다 담고, 맹하(孟夏)에는 송어(松魚)인데 두에다 담고, 중하(仲夏)에는 대맥·소맥·죽순·오이인데, 각기 두에다 담고, 양두·살구는 변에다 담는다. 계하(季夏)에는 가지(茄子)·동아(冬瓜)는 각기 두에다 담고, 능금은 변에다 담는다. 맹추(孟秋)에는 기장(黍)·피(稷)·조(粟)인데 각기 두에다 담고, 중추(仲秋)에는 벼(稻)·연어(年魚)는 각기 두에다 담고, 밤(栗)은 변에다 담는다. 계추(季秋)에는 기러기는 두에다 담고, 대추·배는 각기 변에다 담는다. 맹동(孟冬)에는 감·굴·밀감은 각기 변에다 담고, 중동(仲冬)에는 고니(大鵝)는 두에다 담고, 계동(季冬)에는 생선·토끼인데 각기 두에다 담는다.

날을 가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삭망전(朔望奠) 때를 만나면, 한가지로 천(薦)한다. 혹시 일르거나 늦은 것이 있다면, 그 성숙하는 대로 천하고, 월령(月令)에 구애하지 아니한다. 수수(蒐狩)에 사슴·노루·꿩을 올리는 데는 각기 두에다 담는다. 그 천(饌)으로 해야 할 것은 종묘령이 부익에 나아가서 가마를 살펴보고, 그 소속을 거느리고 임시하여 짓는다.

판전사의 자리를 조계(階)의 동남쪽에서 서향하여 설치하고, 또 관세위(盥洗位)를 조계의 동남쪽에서 북향하여 설치한다. 뇌(鬯)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엮어놓고, 비(篋)는 세의 서남쪽에 펼쳐 있게 하되 수건(巾)을 담아 놓는다.”

행례(行禮) “천신하는 날, 종묘령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감실을 열어, 소제하고 신물을 담기를 끝내면, 판전사가 통상복으로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선다. 사배(四拜)하고 관세위로 나아가 물에 손을 씻고 손을 닦고 나서 동계로 해서 올라가 목조

실(穆祖室)로 나아가 지계문 밖에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사자가 신물을 판전사에게 주면, 판전사가 받들고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 드리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지계문을 나와서 익조실(翼祖室)로 나아가고, 다음에 도조실(度祖室)로 나아가고, 다음에 환조실(桓祖室)로 나아가고, 다음에 태조실(太祖室)로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서 네 번 절하고 물러간다.”

2) 세종조의 「천신종묘의(薦新宗廟儀)」(1474)¹⁴⁾

위의 세종 조의 진설과 행례가 같으나 천신 물종과 월령에 차이가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陳設 前一日奉常寺設新物於齊廚奉常寺 正與宗廟令詣廚同日至日設籩豆於每室戶外以新物實之

每室孟春薦青魚各實以豆仲春水松魚各實以豆季春蕨實以豆孟夏筍實以豆仲夏大小麥瓜各實以豆櫻桃杏各實以籩季夏稻黍稷粟茄子冬瓜各實以豆林檎實以籩孟秋鯉魚實以豆梨實以籩仲秋柿棗栗各實以籩新酒實以爵季秋鴈實以豆孟冬橘柑實以籩薦禽¹⁵⁾各實以豆仲冬天鵝瓜魚各實以豆季冬魚兔實以豆

或有早晚者隨其成熟以薦不拘月令其應饌者宗廟署令詣廚省護師其屬臨造

設奉常司正位於阼階東南南向又設盥洗於階東南北向嚮在洗東加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

○行禮 薦新日宗廟署令帥其屬開室掃除實新物畢奉常寺正以常服入就位西向立四拜詣盥洗位北向立盥手脫手訖升自阼階詣第一室戶外北向立執事者以新物授奉常司官奉常司官捧詣神位前北向跪奠俯伏興平身出戶次詣各室捧奠並如上儀訖降復位四拜退”

3. 천신 담당관청과 감찰

천신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전국에서 철따라 올라오는 천신 물종의 물품 등급을 가리고, 물종의 수송 업무는 사용원에서 담당하였다. 특히 생물(生物)의 신속한 수송에 대한 주의가 여러 차례 기록에 나온다. 종묘의 천신례는 왕이 직접 참례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신물을 올리는 것은 봉상시 관원이 담당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선조 조에는 봉상시 관원이 없어서

사용원 관원이 올린 적이 있다.

1) 천신의 감찰¹⁶⁾

예종 원년에 사용원에서 관장하는 문소전의 천신을 검찰하는 조건을 예조에서 올렸는데 이는 문소전 뿐 아니라 다른 전에 올리는 천신도 마찬가지로 관장되었다.

1. 사용원은 매달 10일에 일차로 어떤 물건은 천진되고 어떤 물건은 천진되지 않는 것과 천신한 물건의 수량과 등급을 갖추어 본조에 보고하여, 본조에서 검찰하도록 하소서.

1. 경중의 제사(諸司)와 외방의 제도(諸道)는 종묘에 천신하는 예에 의거하여 어떤 월령에 어떤 물건은 봉진(封進)하였고 어떤 물건은 생산되지 않았음을 본조에 이문하게 하소서.

1. 천신하는 물선은 이미 이제 월령대로 계산하지 않으니, 생산되는 절기를 따라 천진하게 하고, 제사 및 제도에서 월령에 구애되어 곧 봉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사용원·봉상시로 하여금 그 절기의 빠르고 늦음에 따라 일찍 생산되는 물건을 본조에 미리 보고하고, 본조에서 이문하여 독촉하게 하소서.

1. 모든 철따라 나는 물건은 그 산출됨에 따라 많고 적고 간에 구애되지 말고 천진하게 하고, 제사·제도에서 천진한 후에 계속하여 진상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비록 일찍 생산되는 물건이 있어도 수량이 만약 적으면 곧 천진하지 않고 반드시 많이 생산되기를 기다려서 진상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그 일찍 생산되는 것에 따라 많고 적음을 구애하지 말고 봉진하도록 하소서.

1. 사용원의 천신을 소속된 호조에 보고하였다가 본조에 이문하게 되면 반드시 지체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모든 천신에 관여되는 일은 곧바로 본조에 보고하소서.

『조선왕조실록』의 천신 감찰에 관한 기록

세종 30년 2월에 철따라 천신하는 물건의 질을 사용원에서 조사하라고 유시하였다. 여러 도의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철따라 나는 물건을 천신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인데, 지금 여러 도에서 올리는 철따라 물건의 혹 천신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혹 빠뜨리고 올리지 아니하거나 하여, 신하로서 임금을 봉양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으니, 금후로는 천신하는 계절에는 사용방에서 물품을 간색하여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철이 지난 뒤에 그 물품 등급의 높고 낮은 것을 조사하여, 그 상품에 들지 못한 것과 올리는 것을 빠뜨린 자는 승정원에 고하여 소관 관청에 내려 국문하게 하도록 이미 예조와 사용방에 지시를 내렸노라. 대개 물산은 다르지 아니한데 좋고 나쁨이 같지 아니함은 사람이 마음을 쓰고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니, 경들은 그것을 더욱 삼가하라.”¹⁷⁾

중종 23년 1월에 일체의 천신 및 진상물을 즉시 수송하라고 각 도에 하사하였다. “일체의 천신(薦新) 및 진상(進上)에 응하는 생물(生物)을 즉시 수송하지 않고 지체시키면 부패하게 되니, 찰방(察訪) 및 승(丞)으로 하여금 항상 각역(各驛)으로 다니면서 검속(檢束)하게 하라. 검속하지 못한 자는 전최(殿最) 때 빙고(憑考)하고, 역리(驛吏)는 각별히 치죄(治罪)할 내용으로 각 도 감사에게 하사하라.”¹⁸⁾

정조 23년 8월에 “다달이 천신할 특산물을 봉진하는 때가 혹시 날이 저물어 종묘의 문이 잠긴 뒤일 경우에는 문을 잠그는 것을 보류하고 올리게 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도록 명하였다.”¹⁹⁾

선조 25년 5월에 ‘사용원이 아뢰기를, “평상시에 태묘에 천신할 물품을 봉상시 관원이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개성부에 진상한 햇오이를 본원(本院) 제조에게 명하여 종묘와 영녕전에 천신하게 하신 것은 성효)의 소치입니다만 어느 관원이 봉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봉상시 관원이 없으니 사용원 관원이 권도에 의거 대신하게 하라.”²⁰⁾

4. 천신 시기와 감면

조선시대는 왕들은 종묘에 천신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종묘 천신은 여염보다 가장 먼저 올려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 치죄한 기록이 있다.

조선조 후기에 나온 『속대전(續大典)』²¹⁾에는, ‘천신하는 물종은 생산하는 것에 따라서 먼저 봉진하도록 하는데, 혹시 월령 안에 미처 생산해 나오지 못한다면 관찰사가 장계로 추후에 봉진하기를 청하였다. 신(臣)이 삼가 상고해 보건대, 천신은 월령에는 비록 이와 같지마는, 절후가 조만(早晩)이 있고 물산이 진퇴(進退)가 있으니, 혹시 조금 늦은 시기를 만나게 되면 당해 장리(掌理 그 사무를 맡은 관리)가 간신히

갖추어 바치게 되므로, 혹은 신물이 아닌데도 속여서 진상하는 사람과 혹은 전배로써 구차히 충납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불경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으므로, 지금은 생산하는 것에 따라서 봉진하도록 하였다.

가뭇이나 흉황으로 채소나 어물이 귀하여 구하기 어려워지면 궁중의 식사에 쓸 식품을 올리는 물선(物膳)은 줄이라고 하명하였지만 천신은 조상께 올리는 예이므로 꼭 거행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으로 올리라는 당부가 실록에 여러 차례 나온다. 그런데 명종 4년에는 극심한 흉작으로 실농한 농가에 천신을 감면한 예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천신 시기와 감면 기록

광해군 9년 6월에 “태묘에 천신하는 절물(節物)을 번번이 여염에서 산출되어 흔해진 다음에 비로소 봉진하니, 일이 몹시 온당치 못하다. 지금 이후로는 심분 신칙해서 즉시 봉진하도록 하는 일을 해조에서 살펴서 하라.”²²⁾

광해군 10년 6월에 “태묘에 천신하는 절기별 산물을 보면 으레 민간에서 생산해내어 매우 천하게 된 뒤에야 태묘에 올려 제사지내곤 하니 미안스럽게 그지없다. 지금 이후로는 절기별 산물을 본도에서 신칙하여 즉시 올려 제사지내라고 예관에게 이르라.”²³⁾

성종 14년 6월에 내전에서 참외(甜瓜) 한 그릇을 가져다 승정원에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물건을 사처에선 먹기 시작했는데도 이번 월령에 각사에서 아직도 천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니, 그들을 추국하라. 나는 현재 천신하지 아니하였으니 감히 먹을 수 없고, 승지들이 다 그 맛을 보도록 하라.”하였다.²⁴⁾

세종 30년 4월에 임금은 가뭇을 근심하여 선(膳)을 거두고 예조에 전지하기를, “문소전·휘덕전·현덕빈 혼궁의 공상(供上) 이외에는 각전·각궁에 술을 내지 말고, 여러 도에서 삭망에 진상하는 것도 천신을 제외하고는 바치지 말라.”하였다.²⁵⁾

문종 원년 5월에 가뭇을 맞아서 왕은 “지금 오래 가물어서 내가 매우 염려한다. 문소전·휘덕전·경회전에 천신 및 진상하는 신미(新味)의 물선 외의 각전·각궁에 망전·망후로 바치는 물선은 잠시 바치지 말게 하라.”²⁶⁾

세조 6년 3월에 “지금 명나라 사신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피폐하고, 또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는

때를 당하여 파종이 가장 급하니, 천신 제향과 삭망 진상 이외에 별진상하지 말라.”²⁷⁾

중종 9년 9월에 “사슴 고기 포 등 물건은 과연 개정할 수 없으며, 새끼 사슴이 모자랄 때에는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천신하는 예를 오래도록 그치는 것은 미안하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²⁸⁾

명종 3년 정월²⁹⁾과 4년 10월에는 팔도에 흉황이 극심하여 늘 구황 정사를 염려한 백성을 진휼하려는 뜻에서 “실농한 각 고을에 대해서는 물선과 천신을 명년 가을까지 감면하라 하였다.”³⁰⁾

5. 각전의 천신

조선시대에 천신은 주로 왕실의 사당인 종묘(宗廟)³¹⁾에 올렸지만 궁안에 있는 선원전(璿源殿)³²⁾, 문소전(文昭殿)³³⁾, 경모궁(景慕殿)³⁴⁾, 연은전(延恩殿)³⁵⁾ 등과 왕이나 왕비가 돌아갔을 때 관을 모시던 빈전(殯殿)에도 올렸다.

『조선왕조실록』의 각전에 천신 올린 기록

광해군 9년 6월에 “태묘에 천신하는 절물을 번번이 여염에서 산출되어 혼해진 다음에 비로소 봉진하니, 일이 몹시 온당치 못하다. 지금 이후로는 십분 신칙해서 즉시 봉진하도록 하는 일을 해조에서 살피서 하라.”³⁶⁾

광해 10년 6월에 “태묘에 천신하는 절기별 산물을 보면 오래 민간에서 생산해내어 매우 천하게 된 뒤에야 태묘에 올려 제사지내곤 하니 미안스럽게 그지없다. 지금 이후로는 절기별 산물을 본도에서 신칙하여 즉시 올려 제사지내라고 예판에게 이르라.”³⁷⁾

철종 2년 12월에 진전에 나아가 천신을 행하였다³⁸⁾.

세종 27년 10월에 예조에 전지하기를, “문소전의 천신은 각각 월령에 따라 천진하도록 이미 성법으로 되어 있으나, 만물의 나는 것이 가지런하지 아니하여 혹은 그 달에 미쳐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만일 <그 달에> 미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맞추어 천진하고, 혹시라도 늦어지지 말게 하라.”하였다³⁹⁾.

세조 8년 9월에 왕이 사냥한 짐승을 신하를 보내어 종묘에 바치고, 문소전에 천신하였다⁴⁰⁾.

단종 원년 7월에 예조에 전지하기를, “올해 곡식이 장차 익으려 하는데 가뭄의 재앙이 드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중략)… 문소전·경희전의 천신과 대전에 진

상하는 절물은 옛과 같이 하라.”하였다⁴¹⁾.

연산군 3년 5월에 전교하기를, “효사묘(孝思廟)에 천신하는 것을 연은전의 예에 의하여 하라.”하였다⁴²⁾.

정조 원년 6월에 종묘와 경모궁에 천신하는 물종은 공선 절목(貢膳節目)의 예에 의하여 헤아려 들여오게 하였다⁴³⁾.

정조 원년 1월에 경모궁 월령 마다의 천신을 더 정하되, 태묘의 혼전에 비하여 한 등급을 낮게 했다⁴⁴⁾.

정조 9년 6월에 경모궁에 전배하고, 경모궁은 동산에서 난 과일을 천신하라 명하였다⁴⁵⁾.

예종 원년 9월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와 문소전에 천신할 어육은,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졸곡(卒哭) 전에는 올리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⁴⁶⁾.

영조 7년 6월에 예조에서 말하기를, “국훈 초상의 빈전에는 천신하는 절차가 있으나 천룡할 때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하니, 예대로 하라고 명하였다⁴⁷⁾.

정조 원년 3월에 “빈전에 천신하는 16가지 종류를 줄이도록 명하였으니, 선(先)왕조 임신년의 수교에 따른 것이었다.”⁴⁸⁾

III. 천신(薦新) 물종

1. 조선 초기 종묘 천신 월령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천신 물종의 종류와 월령은 똑같지는 않다. 세조 7년⁴⁹⁾과 동 12년(1466)에는 ‘무릇 천신 및 진상하는 물건은 월령(月令)을 기다리지 말고 진공(進供)하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월령이 지난 뒤에야 천신하게 되니, 지극히 부당하다. 이제부터는 월령에 관계 없이 생산되는 대로 올리게 하라.”⁵⁰⁾하였다.

조선조 초기인 태종 13년(1412)에 시물(時物)을 종묘에 천신하도록 명하였는데, ‘2월에는 얼음, 3월에는 고사리(蕨), 4월에는 송어(松魚), 5월에는 보리·죽순·앵도(櫻桃)·외(瓜)·살구, 6월에는 능금(林檎)·가지·동아(東瓜), 7월에는 서(黍)·직(稷)·조(粟), 8월에는 연어(年魚)·벼(稻)·밤(栗), 9월에는 기러기·대추·배, 10월에는 감귤(柑橘), 11월에는 고니(天鵝), 12월에는 물고기·토끼’ 이다⁵¹⁾.

2. 천신 월령(月令) 물종과 그릇

『국조오례의』 「천신종묘의」⁵²⁾에 천신 물종을 고려 시대, 세종조와 비교하여 표 1로 정리하였다. 고려 조에는 천신 물종이 7종 밖에 없고, 세종 조에는 27 종이고, 성종 조인 『국조오례의』에는 31종이 나온다. 그런데 천금 중에는 동물임을 나타낸 한자가 3자(字) 나오는데 무엇인지 잘 알아볼 수가 없다.

태종 13년(1412) 실록에 나오는 천신 물종은 세종 조의 《오례》에 나온 물종과 동일하다.

천신의 신물은 두(豆), 변(籩), 작(爵) 등의 3가지 제기에 담아 올린다. 두는 제사를 지낼 때 신위 오른 편에 김치나 고기, 젓, 국 따위를 담아 놓는 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천신 때에는 생선이나 채소, 육물을

담았다. 변은 제사를 지낼 때 신위 왼편에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아 놓는 대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천신에서는 과일을 담았다. 작은 제사에 사용하는 술잔인데 햅쌀술을 올릴 때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초기 『오례의(五禮儀)』에 나오는 천신 월령(月令)^{53,54)}은 표 2와 같다. 천신 물종은 절후(節候)의 여건에 의하여 변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3. 왕의 사냥과 천금(薦禽)

조선조의 천신은 다른 물종은 전국에서 관·민이 구해 궁중에 들여오지만 천신 육물은 왕이 직접 사냥이나 강무에 행행하여서 잡힌 조류와 짐승을 천신

표 1. 천신 물종의 변천

월		고려 조 물종	세종조 《오례》 (1449)		성종조 『국조오례의』 (1474)	
			물종	기(器)	물종	기(器)
맹춘(孟春)	정월	-	-	豆	청어(靑魚)	豆
중춘(仲春)	2월	얼음	얼음	豆	빙송어(氷松魚)	豆
계춘(季春)	3월	-	고사리	豆	고사리(蕨菜)	豆
맹하(孟夏)	4월	보리, 앵도	송어	豆	죽순(筍)	豆
중하(仲夏)	5월	-	보리, 밀, 죽순, 외	豆	보리(大麥), 밀(小麥), 외(瓜)	豆
			앵두, 살구	籩	앵두(櫻桃), 살구(杏)	籩
계하(季夏)	6월	-	가지, 동아	豆	벼(稻), 기장(黍), 피(稷), 조(粟), 가지(茄子), 동아(冬瓜)	豆
			능금	籩	능금(林檎)	籩
맹추(孟秋)	7월	서직(黍稷) 양미(梁米)	기장, 피, 조	豆	연어(鱈魚)	豆
			-		배(梨)	籩
중추(仲秋)	8월	마자(麻子)	벼, 연어	豆	감(柿), 대추(棗), 밤(栗)	籩
			밤	籩	햅쌀술(新酒)	爵
계추(季秋)	9월	-	기러기	豆	기러기(雁)	豆
			대추, 배	籩	-	
맹동(孟冬)	10월	-	감귤, 밀감	籩	귤(橘), 감자(柑子)	籩
			-		천금(薦禽), 평(生雉)	豆
중동(仲冬)	11월	-	고니	豆	고니(天鵝), 과어(瓜魚)	豆
계동(季冬)	12월	어물	생선, 토끼	豆	송어(秀魚), 토끼(兔)	豆
물종수		8종	26종		31종	

표 2. 『오례의(五禮儀)』의 천신 월령

월	천신 품목
1월	햇미역(旱薑)
2월	생합(生蛤), 생낙지(生絡締), 빙송어(氷松魚), 생전복(生全鰓), 반건치(半乾雉), 당귀싹(當歸芽), 작실차(雀舌茶), 미나리(水芹)
3월	누치(訥魚), 황조기(黃石首魚), 웅어(葦魚), 고사리(蕨菜), 신감채(辛甘菜), 청굴(靑橘)
4월	준치(眞魚), 오징어(烏賊魚), 죽순(竹筍)
5월	보리(大麥), 밀(小麥), 오이(瓜子), 앵두(櫻桃), 살구(黃杏)
6월	올벼(旱稻), 수수(黍米), 피쌀(稷米), 좁쌀(粟米), 능금(林檎), 오얏(李實), 동아(冬瓜), 수박(西瓜), 참외(眞瓜), 가지(茄子), 은구어(銀口魚)
7월	연밭(蓮實), 개암(榛子), 잣(栝子), 호도(胡桃), 배(生梨), 청포도(靑葡萄), 연어(鯨魚)
8월	홍시(紅柿), 대추(大棗), 밤(生栗), 햅쌀술(新稻酒), 송이(松茸), 게(生蟹), 붕어(鮪魚)
9월	석류(石榴), 머루(山葡萄), 다래(彌候桃), 기러기(生雁)
10월	감자(柑子), 귤(橘), 유자(柚子), 은행(銀杏), 꽃감(乾柿), 은어(銀魚),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마(薯蕷)
11월	뱅어(白魚), 청어(靑魚), 과어(瓜魚), 평(生雉), 고니(天鵝)
12월	유감(乳柑), 동정귤(洞庭橘), 당유자(唐柚子), 송어(秀魚), 토끼(生兔)

* 『증보문헌비고』에는 2월에 빙송어 대신 생송어가 있고, 당귀싹이 없고, 3월에 석수어 한가지가 더 있고, 11월에 평이 없다.

하였다는 기록이 실록에 많이 나온다. 그리고 사냥으로 잡은 짐승은 거리가 떨어져있어서 날을 가리지 말고 바로 분부하여 말을 달리게 하여 즉시 종묘에 천신하고, 만약 삭망일을 만나면 겹하여 천신하였다.

천신에 올리는 육물은 왕이 손수 사냥하거나 강무 때 잡은 것을 올리는데 겨울철에 올린다.

사냥으로 잡은 것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살(上殺)한 짐승 만을 올렸다. 천신이라 사냥하여 잡은 가장 좋은 것을 종묘에 바쳐 제사를 지내는 뜻하는 것이다. 상살은 “짐승을 쏘 때 왼쪽 표(鵞 어깨 뒤 넓적다리 앞살)에 쏘아 오른쪽 우(脰 어깨죽지 앞의 살)로 관통한 것”을 최상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치명적인 사격술을 뜻하는데 현대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한다면 최소한의 고통으로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수렵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태종 3년(1403) 10월에 사냥하여 종묘에 천신하는 의례를 상경계 하였는데 ‘천자(天子)가 사냥할 때에는 큰 기(大綏)를 내리고, 제후가 사냥할 때에는 작은 기(小綏)를 내린다.’는 것과, ‘상질로 잡은 것(上殺)은 변두(籩豆)에 채우고, 하질로 잡은 것(下殺)은 빈

객(賓客)을 대접하는 데에 채운다’하였다⁵⁶⁾. 태종 12년(1412) 2월에 상살한 금수만을 천신하고 상살(上殺)이 아닌 것을 젓(醢)을 담아서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이바지하게 하라 하였다⁵⁷⁾. 성종 14년 1월에 전렵(田獵)은 옛 선도 감히 폐하지 아니하여 <사냥한 것 중에서> 상살은 종묘에 올리고, 중살은 빈객에 이바지 하며, 하살은 주방에 썼는데, 매를 놓아 사냥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⁵⁸⁾.

『조선왕조실록』에는 사냥의 유형이 강무(講武), 매사냥, 몰이사냥, 일반 사냥 등이 나오고, 사냥을 구경하거나 매사냥을 구경한 기록들도 나온다. 매사냥은 길들인 매로 평이나 토끼 따위를 잡는 사냥법이고, 몰이사냥은 삼군의 갑사(甲士) 및 기병, 보병 등의 몰이꾼을 동원하여 사냥할 짐승을 왕이 있는 곳으로 물게하여 왕이 사냥하는 형태의 수렵 방법이다. 조선 전기의 군왕 중 출렵한 기록을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세종이 782회, 세조가 309회, 태종이 255회, 성종이 247회의 순으로 많고, 다른 왕들은 대개 20회 미만이었다⁵⁹⁾.

강무는 조선조에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 농한

기를 이용하여 강무장으로 지정된 곳에서 실시되었던 수렵을 통하여 무예연습을 하는 군사훈련이다. 군사훈련의 목적 이외에도 강무하여 잡은 짐승 중 일부는 제사에 바치므로써 유교적 의례를 중시하는 중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중종 3년(1508) 10월에 강무하는 것은 날짐승을 천신하기 위함임이요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함인데, 내가 즉위한 후로는 한 번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년에는 이를 행하고자 하니 먼 지방의 군사는 징용하지 말고 경기 군사로써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⁶¹.

사냥의 폐해와 사슴 구하기가 어려움 대하여 『태종실록』⁶² 『중종실록』⁶³와 『연산군일기』^{64,65}에 천신을 중지할 것을 청하였지만 군왕들은 사냥에서 얻은 육물을 천신으로 올리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 강력히 주장하였다

『성종실록』에 천신 품목 중 오리, 고라니, 고니 등 육물을 올리는 법에 대하여 나온다. “『문헌통고』를 살펴보건대, ‘무릇 천신은 모두 담당한 관사에서 보고할 때, 새 것으로 공진(供進)할 만한 것은 먼저 태상시(太常寺)에 보내어 상식(尙食)으로 하여금 서로 간택하게 하고, 이어서 신물(新物)에 적당한 자미(滋味)를 곁들여서 태묘에 천신한다.’고 하였고, 천신의 주에, ‘맹동(孟冬)에는 두(豆) 하나에 가리기를 담고, 중동(仲冬)에는 두 하나에 고라니(馬鹿; 노루의 일종)를 담는다.’고 하였으며, 세종조의 천신 의주에, ‘중동에는 고니(天鵝)를 두(豆)에 담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종묘의 각 방마다 고니 1마리씩을 익혀서 바치는데, 몸체가 크기 때문에 두에 담을 수 없어서 생갑(牲匣)에 담게 되니, 비단 고제(古制)의 두에 담는다는 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러 도에서 공진(供進)하는 것이 균일하지 못하여 혹은 먼저 바치고 혹은 나중에 바치며, 먼저 바친 것은 혹은 맛이 변하여 천신하는 의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여러 도에서 공진할 때 세 마리 이상은 곧 삶아 익혀서 몸체를 갈라 두에 담아 바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또 고제와 세종 때의 상정의를 참고하건대, 무릇 천신하는 물건은 한 해에 두 번 천신하는 법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상정 횡간(橫看)에는, 종묘의 고니는 2월과 9월에 모두 바친다고 하였으니,

비단 예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희귀하여 얻기 어려운 물건을 여러 도에서 공진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예문에 의거하여 중동에 한하여 천신하고, 문소전도 또한 이 예에 따랐다⁶⁶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천신 육물에 관한 기록

태종 12년 9월에는 종묘 천신 위해 갑사(甲士) 5백명으로 광주에서 사냥케 하였다⁶⁷.

태종 13년 2월에 “옛사람이 이르기를 12월 이후의 장로는 맛이 없다 하였고, 때가 아니니 춘수에 잡은 것은 종묘에 천신하지 말라.”⁶⁸하였다.

태종 13년 10월에 임금이 광주(廣州)에서 사슴 두 마리를 쏘아 잡아서 바로 말을 달려 종묘에 천신하게 하였다⁶⁹.

태종 14년 9월에 예조에서 아뢰었다. “사냥에서 잡은 짐승은 날을 가리지 말고 즉시 종묘에 천신하고, 만약 삭망일(朔望日)을 만나면 겸하여 천신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⁷⁰.

태종 14년 11월에는 남향 제사에 쓸 금수를 사냥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였다⁷¹.

중종 9년 9월에 예조 판서가 아뢰기를, “사용원이 받아들이는 사슴 고기 포·사슴 꼬리·사슴 혀는 여러 번 감하였으므로 공용이 넉넉지 못하니, 더 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⁷².”

중종 9년 12월에 황해도도의 아록을 진상하는 폐단을 아뢰었다⁷³.

IV. 결과 및 고찰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살펴본 역대 궁중의 천신 풍속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천신 풍속의 기록은 고려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조선조 초기에 천신의가 정해졌다.

천신물종은 매 철마다 새로이 나는 햇것을 중심으로 월별로 종묘에 천신하였으며 천신 물종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절후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천신물종을 담는 기명(器名)은 두, 변, 작 등이 있으며 이 중 두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작은 험쌀을 올릴 때 사용하였다.

천신 물종 중 육물은 대부분 왕이 직접 사냥한 짐

승으로 올려졌다.

고려조의 천신 물종은 음 2월에 1종류(얼음), 4월 2종류(보리, 앵도), 7월 3종류(기장, 피, 양미) 8월 1종류(마자) 12월 1종류(어물) 등 7품목이며 이 중 곡식 4, 어류 1, 과실 2, 기타 1 로 구성되어있다.

태종13년의 천신 물종은 음력 2월에 1종류(얼음), 3월 1종류(고사리), 4월 1종류(송어), 5월 5종류(보리, 죽순, 외, 앵두, 살구), 6월 3종류(능금, 가지, 동아), 7월 3종류(기장, 피, 조), 8월 3종류(연어, 벼, 밤), 9월 3종류(기러기, 대추, 배), 10월 2종류(감자, 꿀), 11월 1종류(고니), 12월 2종류(물고기, 토끼) 등 25품목이며, 이 중 곡식 5, 육물(짐승) 3, 어류 3, 채소 5, 과실 7, 기타 1로 구성되어있다.

세종조의 천신 물종은 음력 2월 1종류(얼음), 3월 1종류(고사리), 4월 1종류(송어), 5월 6종류(보리, 밀, 죽순, 외, 앵두, 살구), 6월 3종류(능금, 가지, 동아), 7월 3종류(기장, 피, 조), 8월 3종류(연어, 벼, 밤), 9월 3종류(기러기, 대추, 배), 10월 2종류(감귤, 밀감), 11월 1종류(고니), 12월 2종류(물고기, 토끼) 등 27품목이며, 이 중 곡식 6, 육물(짐승) 3, 어류 3, 채소 5, 과실 8, 기타 1 로 구성되어있다.

성종조의 천신 물종은 음력 1월 1종류(청어), 2월 1종류(빙송어), 3월 1종류(고사리), 4월 1종류(죽순), 5월 5종류(보리, 밀, 외, 앵도, 살구), 6월 7종류(벼, 기장, 피, 조, 가지, 동아, 능금), 7월 2종류(배, 연어), 8월 4종류(감, 대추, 밤, 햅쌀), 9월 1종류(기러기), 10월 4종류(감자, 꿀, 천금, 평), 11월 2종류(파어, 고니), 12월 2종류(송어, 토끼) 등 31품목이며, 이 중 곡식 6, 육물(짐승) 5, 어류 5, 채소 5, 과실 9, 기타 1 로 구성되어있다.

조선초기 『오례의』에 나오는 천신 물종은 음력 1월 1종류(햇미역), 2월 8종류(생합, 생낙지, 빙송어, 생전복, 반건치, 당귀썩, 작설차, 미나리), 3월 6종류(누치, 황조기, 웅어, 고사리, 신감채, 청귤), 4월 3종류(준치, 오징어, 죽순), 5월 5종류(보리, 밀, 오이, 앵두, 살구), 6월 11종류(올벼, 수수, 피쌀, 좁쌀, 능금, 오얏, 동아, 수박, 참외, 가지, 은구어), 7월 7종류(연밥, 개암, 잣, 호도, 배, 청포도, 연어), 8월 7종류(홍시, 대추, 밤, 햅쌀, 송이, 게, 붕어), 9월 4종류(석

류, 머루, 다래, 기러기), 10월 9종류(감자, 꿀, 유자, 은행, 꽃감, 은어, 대구, 문어, 마), 11월 5종류(뱅어, 청어, 파어, 평, 고니), 12월 5종류(유감, 동정귤, 당유자, 송어, 토끼) 등 71품목이며 이 중 곡식 6, 육물(짐승) 4, 어류 21, 해조류 1, 채소 10, 과실 27, 기타 2 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천신 물종은 매 때때마다 나는 햇것이므로 이 풍속이 절식과 시식으로 정착되어 발달하게되는 배경이 된다.

V. 결 론

조선시대 궁중 의례와 궁중의 식생활 문화를 알아 보고자 조선시대 궁중의 천신례와 천신 물종에 대한 연구는 CD-ROM 국역본 『조선왕조실록』 수록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천신은 예로 중국의 송나라때 생긴 제도로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조선시대 초기에 천신의가 정해졌고, 태조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 내내 거행된 하나의 국가적인 길례 의식이었다.

천신에 올리는 물종의 물품은 그 등급을 가리고, 수송 업무는 사옹원(司饔院)에서 담당하였다.

종묘의 천신례는 왕이 직접 참례하기도 하지만 신물을 올리는 것은 봉상시(奉常寺) 관원이 담당으로 정해 있다.

조선시대의 국왕들은 종묘에 천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햇것이 나오면 가장 먼저 종묘에 올리도록 중용하였으며, 가뭄이나 흉황일 때에도 궁궐의 식사에 쓰이는 물선(物膳)은 줄일지라도 천신은 선조께 올리는 중요한 예이므로 감면하지 않았다.

천신 물종은 고려 조에는 8종, 세종 조에는 26종, 성종 조에 『국조오례의』에는 31종, 『오례의』에는 71종이 나온다.

천신물종을 담는 기명은 두(豆), 변(籩), 작(簋)의 3가지에 담아 올린다.

천신 물종은 대개 관·민이 구해 궁중에 들어오지만 천신 육물은 왕이 직접 사냥이나 강무에서 잡은 짐승을 천금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조선시대 왕들의 천신에 대한 사상과 천신 율령을 통하여 당시의 식품 종류와 첫 산출 시기를 잘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궁중음식 연구의 실증적 문헌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VI. 문헌

- 『서울600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3-9-2-4.html> (황혜성 : 한국요리백과사전, 삼중당, 1976.)
- 신명호(2002) :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54.
- 이태웅(1996)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임금들의 신체활동과 유희·오락, 한국체육학회지 35(4):27.
- 이성우(1986) : 조선왕조 궁중식에 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1) : 8.
- 『서울600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inmul/terms/1311.html>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민족문화추진회국역 (1995) : CD-ROM 국역본『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식회사 서울.
- 『서울600년사』, 한성부시대(Ⅰ), 제7장 서민생활, 제2절 음식.
- 『서울600년사』 민속, 3장 의식주, 제2절 식생활.
- 증보문헌비고 : 1903년~1906년에 걸쳐 고종의 명에 따라 홍문관에 찬집소를 두고 기왕의 문헌비고(文獻備考)를 바탕으로 상고 이래 대한제국까지의 우리 나라 문물 제도의 전고(典故)를 총망라하여 16고로 수록한 책이다.
-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5월 辛未.
- 신명호, 앞의 책, 237쪽.
-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3월 辛丑.
- 『세종실록』 권130, 오례, 길례의식, 종묘천신의.
- 『국조오례의』 : 조선초기에 오례(길례, 빈례, 가례, 군례, 홍례)를 중심으로 한 관·민의 모든 의식 절차를 제정한 책. 세종이 개국 이래 제례(制禮) 작업에 뜻을 두어 당시 예조판서 허조 등에게 고급의 예서를 참작케하여 <오례>를 편찬에 착수케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완성하지 못하고 세조때 강희맹의 손을 거쳐 성종5년(1474)에 신숙주, 정척 등이 완성하였다. 후에 『경국대전』의 예전(禮典)에 들어가게 되었다.
- 맹동에 천금(薦禽)에 이어서 짐승 이름으로 생각되는 3글짜가 있는데 불분명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 『예종실록』권4, 예종 원년 3월 癸丑.
- 『세종실록』권119, 세종 30년 2월 己巳.
- 『중종실록』권60, 중종 23년 1월 乙未.
- 『정조실록』권52, 정조 23년 8월 庚子.
-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5월 辛未.
- 속대전 : 『경국대전』 후의 교량과 조례를 계속하여 모아 김재로가 편찬한 조선조의 법전으로 영조 22년(1746)에 간행되었고 6권 5책이다.
- 『광해군일기』권116, 광해군 9년 6월 庚戌.
- 『광해군일기』권129, 광해군 10년 6월 庚午.
- 『성종실록』권115, 성종 14년 6월 乙丑.
- 『세종실록』권120, 세종 30년 4월 癸未.
- 『문종실록』권7, 문종 원년 5월 丙午.
- 『세조실록』권19, 세조 6년 3월 己丑.
- 『중종실록』권20, 중종 9년 9월 丁亥.
- 『명종실록』권7, 명종 3년 정월 丙申.
- 『명종실록』권9, 명종 4년 10월 戊戌.
- 종묘 : 조선조 역대 임금과 비 그리고 추존된 왕비의 위패를 두던 왕실의 사당이다. 세종3년에 세운 영녕전은 임진왜란 때에 타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묘우(廟宇)는 선조 41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궁묘(宮廟), 침묘(寢廟), 태묘(太墓)라고도 한다.
- 선원전 : 조선조 역대 임금의 초상을 보관하던 전각으로 진전(眞殿)이라고도 하며, 창덕궁 안에 있다. 초상은 6.25 사변때 부산에 옮겨다가 불타 없어졌다.
- 문소전 : 태조 및 신의왕후(神懿王后)의 혼전으로 태조 5년에 지어 신의 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인소전(仁昭殿)이라 했던 것을 태종8년 태조가 죽자 같이 봉안하여 문소전으로 고쳤다. 경복궁 안에 있었고 세종15년에는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 봉안하였으나 명종 때 없었다.
34. 경모궁 : 사도세자와 그의 비인 현경왕후의 사당으로 창덕궁안에 있다. 현종때 화재로 없어졌다. 원래는 영조 40년에 북부 순화방에 사당을 차렸다가 여름에 동부 승교방으로 옮겨지어 수운묘라 하던 것을 영조 52년에 개축하여 경모궁이라 개칭하였다.
 35. 연은전 : 성종 2년에 그 생부를 추송하여 덕종왕(德宗王)이라고 하였던 것이나 왕위에 오르지 않았던 까닭에 종묘나 문소전으로 그 혼을 모실 수 없어 따로 이 혼전을 세워 모시게 되었고 경복궁 안에 있었다.
 36. 『광해군일기』권116, 광해군 9년 6월 庚戌
 37. 『광해군일기』권129, 광해군 10년 6월 庚午.
 38. 『철종실록』권3, 철종 2년 12월 甲申.
 39. 『세종실록』권110, 세종 27년 10월 辛丑.
 40. 『세조실록』권29, 세조 8년 9월 己未.
 41. 『단종실록』권7, 단종 원년 7월 辛酉.
 42. 『연산군일기』권23, 연산군 3년 5월 丙寅.
 43. 『정조실록』권3, 정조 원년 6월 丙午.
 44. 『정조실록』권3, 정조 원년 1월 癸酉.
 45. 『정조실록』권20, 정조 9년 6월 己丑.
 46. 『예종실록』권1, 예종 원년 9월 丙寅.
 47. 『영조실록』권29, 영조 7년 6월 庚申.
 48. 『정조실록』권1, 선조 원년 3월 庚子.
 49. 『세조실록』권25, 세조 7년 9월 辛亥.
 50. 『세조실록』권38, 세조 12년 2월 甲午.
 51. 『태종실록』권24, 태종 12년 8월 庚申.
 52. 『국조오례의』 권1, 길례 천신종묘의.
 53. 『서울600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3-9-2-6.html>, '오례의(五禮儀) 월령표(月令表)'
 54. 『증보문헌비고』 권57, 禮考, 宗廟, 祭享.
 55. 박영준·변우혁(1994) : 조선전기 수렵문화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2(1) : 56.
 56. 『태종실록』권26, 태종 13년 10월 丙辰.
 57. 『태종실록』권23, 태종 12년 2월 癸未.
 58. 『성종실록』권150, 성종 14년 1월 丙辰.
 59. 박영준·변우혁 : 앞의 논문 : 52.
 60. 박영준·변우혁 : 앞의 논문 : 59.
 61. 『중종실록』권 7, 중종 3년 10월 己巳.
 62. 『태종실록』권 22, 태종 11년 10월 己亥.
 63. 『중종실록』권 29, 중종 12년 8월 丁卯.
 64. 『연산군일기』권 51, 연산군 9년 10월 壬寅.
 65. 『연산군일기』권 51, 연산군 9년 10월 辛亥.
 66. 『성종실록』 권 37, 성종4년 12월 辛酉.
 67. 『태종실록』권 24, 태종 12년 9월 丙午.
 68. 『태종실록』권 25, 태종 13년 2월 辛酉.
 69. 『태종실록』권 26, 태종 13년 10월 丙辰.
 70. 『태종실록』권 28, 태종 14년 9월 甲辰.
 71. 『태종실록』권 28, 태종 14년 11월 庚戌.
 72. 『중종실록』권 20, 중종 9년 9월 丁亥.
 73. 『중종실록』권 76, 중종 28년 10월 壬辰.